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및 자격 조건 완화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4호)

< 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자격요건 개정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42호)

< 국토외곽먼섬 어업인의 공익직접지불금 확대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58호)

<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06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5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4호)] ····· 5

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및 자격 조건 완화 ····· 5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42호)] ····· 12

1. 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자격요건 개정 ····· 12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58호)] ····· 19

1. 국토외곽먼섬 어업인의 공익직접지불금 확대 ····· 19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06호)] ····· 28

1.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8

2.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간 상향 등 ····· 33

Ⅰ.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회부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34	서삼석의원	2026. 3. 9.	2026. 3. 10.
	2217342	서삼석의원	2026. 3. 10.	2026. 3. 11.
	2217358	서삼석의원	2026. 3. 11.	2026. 3. 12.
	2217406	서삼석의원	2026. 3. 12.	2026. 3. 1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4호)

현행법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의 요건을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정착을 위한 한시적 특례와 홍보 확대 등의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제화하되,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2.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42호)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3.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58호)

현행법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4년 우리나라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하지만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우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에 더하여 생계의 터전인 바다에서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와 같은 역할과 중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 법과 먼섬 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4.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06호)

현행법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은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조의3 신설 및 제21조).

Ⅲ. 검토의견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4호)]

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및 자격 조건 완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1. ---------- 5년 ---------- 5년 ----------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2. ---------- --- 85세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경영이양 직불지불제도[1]는 10년 이상 계속 어업에 종사한 고령 어업인 (만 65세～만 75세)[2]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 후계어업인

---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3.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을 완료할 것
4. 그 밖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을 말한다.

2)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자이나,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말까지 한시

에게 이양하는 경우,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연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려는 제도임[3].

< 개정안 관련 경위 및 현황 >

□ 추진 경위

○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국회 지적 발생

○ ('**22 결산국회, 상임위 지적사항**): 수요활성화 방안 강구 및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25 국정감사**) 사업시행 이후 계속해서 사업실적 저조, 수혜자 제고 위한 대책 강구
○ ('**26 예산국회, 상임위 지적사항**) 사업목표 인원대비 실적 부진, 활성화 개선방안 강구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대상 및 지급현황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 지급** (연 120만원 ~ 1,440만원 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인원(누계): ('21) 6명 → ('22) 13명 → ('23) 30명 → ('24) 36명 → ('25) 44명

자료 : 해양수산부

□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수협중앙회의 사전 조사 결과(2021~2030년 참여희망 6,720명)를 토대로, 전국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촌계원 약 3만 명 중 10% 수준인 3,000명을 10년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2021년 시작되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목표 수급인원 각 300명 대비 실제 수급은 각 6명과 13명(누적)에 불과하였고,

2023년부터는 목표 인원을 대폭 하향하여 2023년 38명, 2024년 36명, 2025년 역시 36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누적 30명, 2024년에는 누적 36명, 2025년 9월말 기준 누적 44명으로, 연도별 신규 수급인원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음.

적으로 만 80세 미만까지로 대상자를 확대·운영 중임.

3) 연간 결산소득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440만 원을 지급하며, 결산소득이 2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60%를 지급함.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어업활동 연령의 상향 추세, 기대수준 대비 낮은 지급단가, 신청대상도 어촌계원으로 한정되어 신규인력 유입에 한계가 있고, 어촌계에 최대한 잔류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경영이양 직불제 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편성	본 예 산	3,966	3,966	500	466	466	555
	계획인원	300	300	38	36	36	42
실집행실적	(집행률)집행액	(1.5%)60	(5.5%)218	(47.3%)236	(77.4%)361	(88.8%)395	-
	누계인원	6	13	30	36	44	-

자료 : 해양수산부

□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실적 저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어촌계원 자격 기준을 5년으로, 신청 연령 조건 상한은 만 80세 미만까지로 대상자를 확대·운영 중[4]으로, 75세 이상 17명(전체의 38%)의 참여성과가 있었으나, 제도 설계 당시 목표(매년 300명) 대비 실적 매우 부진한 가운데 2026년 말 특례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특례가 일몰될 경우 사업신청 급감[5]이 우려되는 상황임.

4) 부칙 <법률 제19010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5년으로 한다.
2.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

□ 어업 가능 연령의 상향 추세에 따라 경영이양 시기는 순연되는 추세[6]로 직불금 지급액은 어촌계원 자격 유지시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의 60% 수준[7]으로 낮은 상황인 반면, 농업분야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신청연령을 확대(65~85세 미만)[8]하고 지급단가 인상[9]을 통해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완화한 어촌계원 자격유지 기간(10년→5년)을 일반화하고, 최대연령은 농지이양 직불제와 동일하게 상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80세 이상 85세 미만 어촌계원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되어 은퇴어업인 소득안정과 후계어업인의 유입 촉진이 기대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신청상한 연령이 85세 미만까지 확대될 경우 2027년 지급인원은 62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예산은 6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5) * '25년말 수급자 연령(44명) : 65~69세(14명, 32%), 70~74(13명, 29%), 75~79(17명, 38%)

6) 어가인구 중 70세 이상 비율 : ('17) 21.7% → ('20) 22.4% → ('24) 32.3% (자료 : 해양수산부)

7)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연간 120~1,440만원), 최장 10년 지급 (자료 : 해양수산부)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9) (~'23) 연간 330만원/ha(상한 1,320만원) → ('24~) 600만원(상한 2,400만원) (자료 : 해양수산부)

< 농업분야 경영이양 직불제와 비교 >

<table>
<tr><th>구 분</th><th>경영이양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th><th>농지이양은퇴 직접지불제
(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집행주체</td><td>○특별자치도·시·군·구</td><td>○한국농어촌공사</td></tr>
<tr><td>이양대상</td><td>○어촌계원 자격
* 대상 : 2,077개 어촌계, 10만7천명</td><td>○농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td></tr>
<tr><td>신청자격</td><td>○계원자격 10년 이상 65~74세
* (~`26.한시) 5년 이상, ~79세</td><td>○농업경영 10년 이상 65~84세</td></tr>
<tr><td>지급조건</td><td>○60세 이하에게 계원자격 이양</td><td>○공사, 후계·청년농업인, 64세 이하 전업 농업인, 50세 이하 농업인(3년이상 영농) 에게 매도 또는 공사에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td></tr>
<tr><td>年지급액</td><td>○최소120 ~ 최대1,440만원
<table>
<tr><td>200 만원미만*</td><td>200~2,400 만원 미만*</td><td>2,400 만원초과*</td></tr>
<tr><td>120만원</td><td>결산소득의 60%</td><td>1,440만원</td></tr>
</table>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 기준</td><td>○최대2,400만원
<table>
<tr><td>구분</td><td>ha당</td><td>지급액</td><td>상한(4ha)</td></tr>
<tr><td>매도</td><td>600만원</td><td>단가×면적(ha)</td><td>2,400만원</td></tr>
<tr><td>매도조건부 임대</td><td>480만원</td><td>단가×면적(ha)</td><td>1,920만원</td></tr>
</table></td></tr>
<tr><td>지급기간</td><td>○ 65~75세 : 10년(동일)
76~79세 : 9~6년(연령별 차감)</td><td>○ 65~75세 : 10년(동일)
76~84세 : 9~1년(연령별 차감)</td></tr>
<tr><td>승계(사망시)</td><td>○승계 불가(약정 해지)</td><td>○배우자 승계 가능(상속이전 등기 완료 후)</td></tr>
<tr><td>제도개선
(주요내용)</td><td>(`23.4. 기준)
<table>
<tr><td>구분</td><td>당 초</td><td>개 정</td></tr>
<tr><td>신청 연령</td><td>65~74세</td><td>65~79세
[~`26.까지 한시]</td></tr>
<tr><td>이양 받는 자</td><td>55세 이하</td><td>60세 이하</td></tr>
<tr><td>계원 유지</td><td>10년 이상</td><td>5년 이상
[~`26.까지 한시]</td></tr>
<tr><td>지급 기간</td><td>65~74세
(10~1년)</td><td>65~75세(10년)
76~79세(9~6년)
[~`26.까지 한시]</td></tr>
</table>
<2,077개 어촌계, 10만7천명>
<table>
<tr><td>40대</td><td>50대</td><td>60대</td><td>70대</td><td>80이상</td></tr>
<tr><td>6%</td><td>15%</td><td>32%</td><td>28%</td><td>16%</td></tr>
</table></td><td>(`24.3. 기준)
<table>
<tr><td>구 분</td><td>당 초</td><td>개 정</td></tr>
<tr><td>신청 연령</td><td>65 ~ 74세</td><td>65 ~ 84세</td></tr>
<tr><td>이양 받는자</td><td>한국농어촌공사
64세이하 전업농
50세이하
농업인(3년이상 영농)</td><td>당초 기준
+
후계·청년농업인
(우선권)</td></tr>
<tr><td>이양 방법</td><td>매도, 임대</td><td>매도, 매도조건부임대</td></tr>
<tr><td>연간 지급 단가</td><td>매도 330만원/ha
임대 250만원/ha</td><td>매도 600만원/ha
임대 480만원/ha</td></tr>
<tr><td>지급 기간</td><td>65~74세
(10~2년)</td><td>65~75세(10년)
76~84세(9~1년)</td></tr>
</table></td></tr>
</table>

자료 : 해양수산부, (연령표기 : 이상~이하)

□ 다만,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한다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의 당초 취지 및 목표를 고려해 볼 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제도의 신청대상을 현행 어촌계원에서 연근해어업, 구획어업, 양식어업, 내수면허가어업, 수산종자생산업 등 허가어업으로 확대하는 방안[10]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업 가능 연령의 상향 추세에 따라 경영이양을 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0세미만에서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위해 경영이양 직불대상 자격요건 완화와 신청연령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11].

---

10) 해양수산부는 현행 어촌계원에서 어선, 어구, 양식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11)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42호)]

1. 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자격요건 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u>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u> 2.·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 1. ----------<u>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u>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어선원 직접지불제도[12]는 어선원 소득안정과 어선어업의 유지를 위해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며,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세대 4,500만원 미만인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세대 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함.

< 개정안 관련 경위 및 현황 >

□ 추진 경위

○ 자격요건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국회 지적과 현장 민원 발생

- ○ ('**23 결산국회, 상임위, 예결위 지적사항**): 지원대상 인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자격 요건 설정 필요(어선원 직불 승선요건의 엄격한 기준)
- ○ ('**24 결산국회, 상임위, 예결위 지적사항**): 지원대상 추계 정확성 제고, 지급요건 과도에 따른 탈락자 다수 발생에 따라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 필요

□ 어선원 직접지불제의 대상 및 지급현황

○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에게 연 130만원 지급(가족어선원, 어선의 소유자는 제외)

○ ('23) 97억원, 7,458명 → ('24) 97억원, 7,502명 → (25) 89억원, 6,900명

자료 : 해양수산부

1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어선원 직접지불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 시 연간 1만 5,000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신청자 수는 6,900명에서 7,500명 수준에 그치는 등 사업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 어선원 직불제 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예산편성	본 예 산	18,000	19,500	18,490	18,490
	계획인원	15,000명	15,000명	15,000명	15,000명
실집행실적	(집행률)집행액	(49.7%)8,950	(49.6%)9,665	(51.5%)9,517	-
	지원인원	7,458명	7,502명	6,900명	-

자료 : 해양수산부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수산자원 감소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어선원의 대체[13] 등의 영향으로 어업인의 입장에서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야 하는 '최소 승선 일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구체적인 총 승선일수에 대한 기준 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14] 승선일수

13) 외국선원(명) : ('21) 13,894 → ('22) 14,281 → ('23) 16,083 → ('24) 17,689→ ('25) 19,100

1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승선일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승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직불금 대상이 되어 승선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15]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2024년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한 7,502명 중 6.5%에 해당하는 486명은 실제 조업수가 60일 미만임에도 다른 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연 13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였음.

< 어선원 직불금 수령현황('24) >

승선일수	승선 인원수(A)		직불금 수급자 수(B)		승선인원 수 대비 수급비율 (B/A)
합 계	87,935		7,502		
30일 미만	38,171	43.4%	361	4.8%	0.9%
30일 이상 ~ 60일 미만	8,532	9.7%	125	1.7%	1.5%
60일 이상 ~ 90일 미만	8,146	9.3%	284	3.8%	3.5%
90일 이상 ~ 120일 미만	6,880	7.8%	526	7.0%	7.8%
120일 이상 ~ 150일 미만	6,627	7.5%	897	12.0%	13.5%
150일 이상 ~ 180일 미만	5,968	6.8%	1,257	16.8%	20.3%
180일 이상	13,611	15.5%	4,050	54.0%	27.8%

* 출처: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입항신고자료('24 어선원 직불 대상)
** 승선실적 있는 근해어선원(12,762명) 중 39.9%(5,098), 연안어선원(77,795명) 중 3%(2,402) 수급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별지 제12호의7서식)"에서 승선사실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승선기간으로 기재하도록 함

15) (사례) - 1.1~6.30(6개월) 기간 중 총 승선일수 50일 → 수급 가능
- 1.1~5.30(5개월) 기간 중 총 승선일수 90일 → 수급 불가

□ 개정안은 어선원 직불제의 자격 요건을 승선기간에서 승선일수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16](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과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자격 요건을 연중 60일 이상 어업종사자로 개정할 경우 추가 지급인원은 4,800명에서 5,4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예산은 62억원에서 70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17]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불합리한 승선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총 승선일수 요건을 60일로 명확히하여 다소 불합리한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생략)

17) < 추가 재정소요 추계 >

(단위 : 명, 억원)

구 분	승선 인원수(A)	수급자 수 추정*(B)		기 수급자(C)	신규 수급자, 소요예산	
					B-C	예산
60일이상 ~ 180일미만	27,828	28% 적용시	7,792	2,964	**4,828**	**62**
		30% 적용시	8,348	2,964	**5,384**	**70**

* 180일 이상 승선원의 승선인원 수 대비 수령비율(28%)과 향후 어선원 직불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신청자가 확대될 가능성 가정(30%)하여 적용 / 직불금 단가 : 130만원/연

점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18].

18)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어선원 직불제 지급요건 현실화 관련 자료**

□ 어선원 승선일수 · 어선 조업일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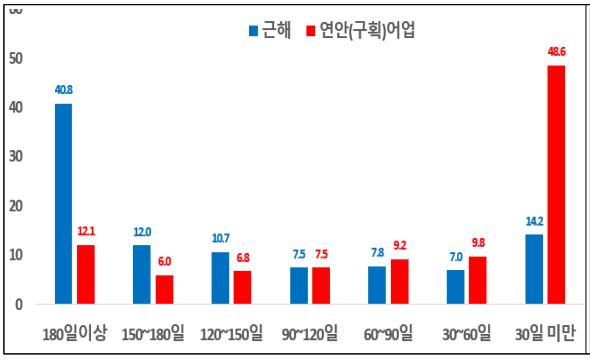

< 어선원 승선 일수 구간별 비율(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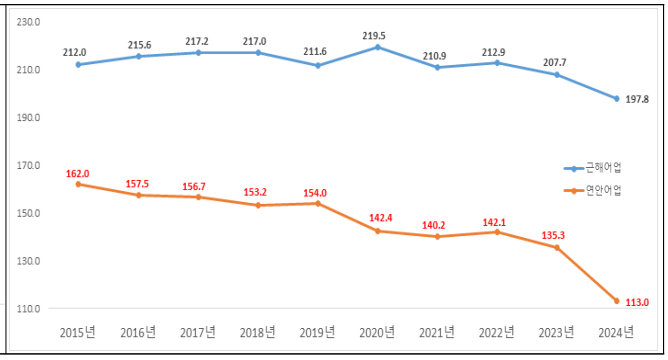

<어선 연평균 조업일수(연근해어업실태조사)>

□ 어선원 직불금 수령현황('24)

승선일수	승선 인원수(A)		직불금 수급자 수(B)		승선인원수 대비 수급비율(B/A)
합 계	**87,935**		**7,502**		
30일 미만	38,171	43.4%	361	4.8%	0.9%
30일 이상 ~ 60일 미만	8,532	9.7%	125	1.7%	1.5%
60일 이상 ~ 90일 미만	8,146	9.3%	284	3.8%	3.5%
90일 이상 ~ 120일 미만	6,880	7.8%	526	7.0%	7.8%
120일 이상 ~ 150일 미만	6,627	7.5%	897	12.0%	13.5%
150일 이상 ~ 180일 미만	5,968	6.8%	1,257	16.8%	20.3%
180일 이상	13,611	15.5%	4,050	54.0%	27.8%

* 출처: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입항신고자료('24 어선원 직불 대상)

** 승선실적 있는 근해어선원(12,762명) 중 39.9%(5,098), 연안어선원(77,795명) 중 3%(2,402) 수급

□ 추가 재정소요 추계

○ 年 4,800명(62억원) ~ 5,400명(70억원) 추가 지급 전망

(단위 : 명, 억원)

구 분	승선 인원수(A)	수급자 수 추정*(B)		기 수급자(C)	신규 수급자, 소요예산	
					B-C	예산
60일이상 ~ 180일미만	27,828	28% 적용시	7,792	2,964	**4,828**	**62**
		30% 적용시	8,348	2,964	**5,384**	**70**

* 180일 이상 승선원의 승선인원 수 대비 수령비율(28%)과 향후 어선원 직불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신청자가 확대될 가능성 가정(30%)하여 적용 / 직불금 단가 : 130만원/연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58호)]

1. 국토외곽먼섬 어업인의 공익직접지불금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이라 함")에 따른 "국토외곽먼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에 대한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단서 신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 다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

	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목과 나목의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6가지 종류의 제도를 운영 중임.

< 2026년도 수산공익직불제 현황 >

구분	직불제명(시작년도)	’26.국비	지원대상	연간 지원 금액
기본형 <중복불가>	조건불리(2014)	50억원	섬·접경지역 非소규모 어가	80만원/어가
	소규모어가(2023)	295억원	영세어가(5톤 미만 어선 등)	130만원/어가
	어선원(2023)	185억원	연근해어업 내국인 어선원	130만원/세대
선택형	경영이양(2021) <조건불리중복불가>	6억원	어촌계원(65~79세)	120~1,440만원/인
	수산자원보호(2021)	152억원	연근해어업 경영주	(최대) 9,250만원
	친환경수산물생산(2021)	480억원	친환경 인증 어가	(최대) 6,500만원
			배합사료 사용 어가	(최대) 2억3천만원

* 예산추이(억원) : (’21) 515 → (’22) 539억원 → (’23) 933 → (’24) 1,062 → (’25) 1,118 → (’26) 1,193
자료 : 해양수산부

□ 현행법 제21조제1항제8호는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19],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20],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있음.

< 2025년도 조건불리지역 현황 현황 >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개 시·군·구, 372개 섬·읍·면·동	33	20	5	23	16	212	1	56	6

자료 : 해양수산부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비연륙 섬지역(2014년～)과 국방상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2020년～)

1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어업인에게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하였는데,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신설되면서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자와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자가 상당 수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불금 간의 중복수급이 제한되었음.

< 개정안 관련 경위 및 현황 >

□ 추진 경위

○ ('14) 육지와 이격거리 8㎞ 이상인 도서지역 대상 조건불리지역직불 시행

○ ('18) 거리와 상관없이 전국 도서지역으로 대상 확대

○ ('23)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신설**되면서 조건불리지역과 **중복수급 제한**

* 소규모어가 연 130만원/어가, 조건불리지역 연 80만원/어가

○ (**'21 결산국회, 상임위 지적사항**): 지급요건 및 단가 현실화를 통해 많은 수산인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현황

○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 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14~)

* ('14) 99억원, 12,967호 → ('18) 102억원, 17,402호 → (23) 60억원, 5,739호 → (25) 50억원, 4,250호

○ '23년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신설되면서 섬지역 어가는 두 직불금 중 택1

자료 : 해양수산부

이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은 소규모어가에 해당되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소규모어가 직불금(130만원/년)을, 非소규모어가는 종전과 같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80만원/년)을 선택하여 수급받고 있는 상황임.

- 2022년 조건불리 직불금 수급자는 16,973어가 였으나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신설된 이후 5,739어가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은 4,250호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특히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에 더하여 생계의 터전인 바다에서 생업과 함께 영토수호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중복수령이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과 「국토외곽먼섬법」의 제정 취지[21]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이들의 공익에 기여하는 비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개정안은 「국토외곽먼섬법」에 따른 "국토외곽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현행법에 따른 직불금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적인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이해됨.

□ 현재 「국토외곽먼섬법」에 따른 국토외곽먼섬(참고자료)은 총 43개섬, 인구는 26,835명, 어가수는 4,021개소로, 소규모어가에 해당

---

2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 않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는 어가수는 1,061개이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는 2,960개임.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통과시 국토외곽먼섬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어가 2,960개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중복수급을 허용한다는 계획으로, 육지와의 거리가 멀고 특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가에 대한 차등 지원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안정과 함께 국토외곽먼섬 지역의 어촌소멸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부 추산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2,960어가, 추가 재정소요는 18.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직불금의 부정 수령 및 중복·편중 지급 방지를 위하여 수산공익직불금 외에 농업·임업 직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 및 환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현행법[22]을 고려해 볼 때, 조건불리지역

---

22)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직불금 제도에 대해 특정 지역에만 중복 수령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 내 다른 직불금 제도의 또다른 예외사유를 허용하게 되며 이 경우 현행법의 입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수용할 경우 현행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국토외곽먼섬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어가(2,960개)의 직불금을 상향하여 주는 방안(연 130만원→180만원, 50만원 추가지급) 또는 국토외곽먼섬의 어업인 전체(4,021개)에 대해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23]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국토먼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소규모어가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중복수령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토먼섬지역 어업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24].

---

23) 국토외곽먼섬의 어업인 전체(4,021개)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어가(2,960개) : 연 130만원→180만원, 50만원 추가지급
-非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어가 1,061개) : 연 80만원→130만원, 50만원 추가지급

24)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국토외곽먼섬법」에 따른 먼섬 현황(지자체 자료 재구성)

번호	시도	시군	섬이름	인구(명)	어가수	조건불리 수급인원
총 계				26,835	4,021	1,061어가 (2,960어가 미수급)
(법)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1	인천	옹진군	백령도	4,875	396	22
2	인천	옹진군	대청도	1,201	279	28
3	인천	옹진군	소청도	221	51	22
4	인천	옹진군	연평도	1,981	472	162
5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104	51	8
6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119	50	32
7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98	45	11
8	전남	진도군	상하죽도	12	3	1
9	전남	진도군	맹골도	93	29	17
10	전남	진도군	죽도(조도면)	39	19	11
11	전남	진도군	곽도	21	14	8
12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1,719	461	209
13	전남	신안군	장도	80	31	13
14	전남	신안군	영산도	50	12	5
15	전남	신안군	대둔도	279	102	39
16	전남	신안군	상태도	69	25	13
17	전남	신안군	중태도	11	4	1
18	전남	신안군	하태도	116	42	15
19	전남	신안군	만재도	70	22	19
20	전남	신안군	다물도	194	71	56
21	경북	울릉군	울릉도	9,042	244	38
22	경북	울릉군	죽도	1	0	0
23	경북	울릉군	독도	34	0	0
24	제주	제주시	비양도	140	26	13
25	제주	제주시	우도	1,618	324	28
26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	216	26	4
27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89	3	0

번호	시도	시군	섬이름	인구(명)	어가수	조건불리 수급인원
(법)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28	전북	군산시	어청도	262	81	26
29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50	15	5
30	전남	여수시	거문도	485	219	19
31	전남	영광군	횡도	3	2	0
32	전남	완도군	여서도	100	61	12
33	전남	신안군	홍도	439	113	70
34	전남	신안군	가거도 (소흑산도)	386	88	64
(시행령) 육지까지 항로의 최단거리가 50㎞ 이상인 섬						
35	전남	여수시	동도	246	129	9
36	전남	여수시	서도	596	265	10
37	전남	영광군	안마도	180	80	11
38	전남	영광군	대석만도	11	7	1
39	제주	제주시	상추자도	922	76	54
40	제주	제주시	하추자도	635	75	3
(시행령) 정기 여객선이 없는 섬						
41	충남	보령시	황도	2	0	0
42	전남	영광군	죽도	4	1	1
(고시) 정기여객선 운항빈도가 낮은 섬						
43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22	7	1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06호)]

1.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3(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년도로 배부되는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25]에 따라 공익직불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공익직불금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6](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이라 함)에 따라 5

25) 매년 실시되는 해양수산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지침서로 2026년의 경우 총 3권으로 배부됨(1권(해양, 해운 등), 2권(수산), 3권(어업, 어촌 등)), 수산공익직불제는 2권(수산)에 수록

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년마다 공익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여 국회의 심의[27]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임업분야의 경우 수산분야와 같이 직불지불금제도의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수산공익직불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별 목표달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원투입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안 제3조의2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7)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부의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제출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심의(2024.12.26., 2025.03.06.,)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연차별 이행계획 부재의 사유 등으로 최종 의결하지는 않은 상태로, 2026년 4월 현재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28]을 제시하고 있음.

공익직불제도의 경우 추진방향에 따라 어업·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연차별 재원마련 등 이행계획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포함 필요 사항에 대한 연구자료(농업분야)[29]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포함 필요 사항>

- 중장기(5년 단위) 목표 및 단계별 목표달성 로드맵
- 공익직불제 대상사업별 중장기 재정투입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공익(농업)직불금 관련 예산 5조원 달성(국정과제) 관련 공익직불제 사업 범위
  - 선택형 직불 확대 기조를 고려한 현행 선택형 직불사업 확대 혹은 추가 사업 발굴 등 중장기 추진 방향성, 준수사항 개편 등 정책대상자 수용성 제고 방안
- 공익기능 개념의 구체화 및 이에 따른 각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개발(시범적용 및 안착)
- 준수사항 개편 시, 개편 사유 및 현장에서의 이행점검 · 적용가능성 제고방안
  - 이해관계자 간 혼선 방지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구체화된 매뉴얼
- 성과관리 및 이행점검 · 부정수급 적발의 효율화 · 스마트화 방안 등
  - 관계기관별 주요 업무분장(책임소재 명확화)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2024)

28) (해양수산부) 수산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령 26개 중 12개는 상임위 제출을 명시하고 있고, 나머지 14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심의회를 거치도록만 규정(참고자료)

29) 손동희,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07.), p. 102~103

2.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간 상향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세부기준을 해양수산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8년----------. ③ ----------대통령령-------.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30]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제한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농촌공익직불법」[31]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32]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지급제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3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각호 생략)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임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지급제한 기간을 상향(3년→8년)하고 지급제한 세부기준의 상향입법(시행규칙→시행령)하려는 것으로 수산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공익직불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을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범위

---

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지급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2호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3호	1년

비고: 제2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거나, 제3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34]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강력하게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8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보조금[35]과 직접지불제도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지급제한기간은 관련 법률들과 수산분야의 특성 및 제도의 실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9

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수산분야 기본계획 현황

순번	법령	계획명	주요내용
1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발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	소금산업 진흥법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후 상임위 제출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수립 후 상임위 제출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수산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소관 상임위 보고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소관 상임위 보고
11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12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소관 상임위 제출
13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소관 상임위 제출
14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진흥 기본계획	수립, 소관 상임위 제출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

순번	법령	계획명	주요내용
17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 심의 소관 상임위 제출
18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소관 상임위 제출
1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 심의
20	어장관리법	어장관리기본계획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소관 상임위 제출
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명 관리대책	수립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
23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진흥 기본계획	소관 상임위 제출
2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산업 육성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2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소관 상임위 제출
26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